경기도 고시 제2015-193호

수도권매립지 폐기물반입수수료 고시

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를「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제19조 및「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및 분담금 부과·징수규정」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5. 10. 5.
경 기 도 지 사

(단위 : 원/톤)

폐기물 종류	반입수수료	시 행 일	비 고
생활폐기물	24,520	2016. 1. 1.	
	29,990	2017. 1. 1.	
	36,670	2018. 1. 1.	

경기도 고시 제2015-5169호

김포 한강시네폴리스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고시

「산업단지 인·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」제15조 규정에 따라 김포 한강시네폴리스일반산업단지계획을 변경 승인 고시합니다.

2015. 10. 5.
경 기 도 지 사

1. 산업단지의 명칭·위치 및 면적(변경없음)
 가. 명 칭 : 김포 한강시네폴리스일반산업단지
 나. 위 치 :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, 걸포동 일원
 다. 면 적 : 1,121,000㎡
2. 단지의 지정목적(변경없음)
 가. 계획적 개발을 통한 영상·문화산업의 창작 거점 도모
 나. 경기도 영상위원회에서 추진중인 문화산업의 현실화
 다.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차세대 성장동력의 기반구축 및 김포시의 이미지 제고
3.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(변경)
 (기정) :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은행영사정로 23번길 21, 김포도시공사(정옥균)
 (변경) :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49, ㈜한강시네폴리스개발(양영대)
4.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(변경)
 가. 개발기간(변경)
  - (기정) 2009. 3. ~ 2015. 10.
  - (변경) 2009. 3. ~ 2017. 12.
 나. 개발방법 :(변경)
  - (기정) 전면매수에 의한 공영개발
  - (변경) 전면매수에 의한 SPC 민,관 공동개발

※ 이하 내용은 당초 승인내용과 변경없음.
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경기도 산업정책과(☎ 031-8030-3092)와 김포시 도시개발과(☎ 031-980-5517)에 비치하고 지형도면은 국토해양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(http://luris.mltm.go.kr)에서 열람 가능합니다.